

2022년 8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사업주는 노동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노동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본법은 '22년 8월'에 시행 예정이며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준비중에 있다.



제 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개정안

※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일: 2022. 8. 18

1.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최근 몇 년간 언론에서는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휴게시설이 규모가 작거나, 화장실 같은 부적절한 공간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게시설을 창고로 사용하거나 폐쇄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일 하는 사람들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사례

- 2016년 1월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백화점이나 마트 직원들이 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계단이나 좁은 공간에 종이박스를 깔고 휴식
- 2016년 1월 모 마트에서 계산원 휴게실은 독립된 공간과 다양한 편의물품들을 비치한 반면, 협력사원 휴게실은 물품과 공간이 열악
- 2016년 4월 모 백화점에서 직원이 소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일간 휴게실을 폐쇄
- 2016년 10월 모 백화점 면세점에서 휴게시설을 매장 창고로 변경하고, 휴게시설을 폐쇄
- 2017년 11월 인천지역 경찰서에서 청소직원들의 휴게시설이 부족하여 화장실 내부에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방치
- 2017년 11월 경비원의 휴게실이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습지 때문에 곰팡이 냄새가 진동



“사업장 휴게시설의 현주소”

2017년 실태조사 결과, 휴게시설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는 높은 반면, 휴게시설은 부족하고, 남녀 구분이 없으며, 설치된 시설·비품도 열악한 것으로 파악 됨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 64.6%
충분하다. 35.4%에 불과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다른 휴식 장소는 작업장 내 41.1%, 외부 휴식 13.6%, 자판기 주변 8.5%, 옥상 5.7%, 본인 차량 5.0%, 계단 3.9%

휴게시설을 매일 이용한다. 원청 47.9%, 하청 46%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원청 30.6%, 하청 41.1%

거의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장소가 멀어서', '시설 낙후' 등의 순이며, 설치되어 있더라도 남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55.9%이며, 하청 노동자 휴게실의 경우 63.2%가 공용

출처 : “2017년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휴게시설 개선 시 장애요인으로는 '공간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비용문제', '사용자의 무관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사업계획 반영 및 휴게시설 관리조직 구성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휴게시설이 필요한 이유?”

1.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예방에 기여

- (신체적 측면) 졸음, 긴장 등의 피로를 해소시키고 장시간 작업, 단순/반복 작업, 정밀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근골격계 긴장, 혈액 순환, 소음 노출 장애 등 신체적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2017년에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에 비하여 휴게시설이 없는 경우가 피로를 경험한 비율이 3.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 (정신적 측면) 문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고객과 다툼이 있었을 때 휴게시설에서 휴식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하여 직무스트레스를 1.5배~2.1배까지 감소시켜 줍니다.

2. 업무능력 향상

- 휴식을 통해 노동자의 신체와 정신을 환기시키면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업무 능력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의 편익 증진

- 휴식을 취함으로써 업무를 더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고, 피로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도 감소합니다.
- 2017년에 시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휴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사업장에서 얻게 되는 편익은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7년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출처:가톨릭대학교 정혜선 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휴게시설은 일하는 사람들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설치합니다.

※ 대상 사업장에 대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의거합니다.

“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명시된 사업장은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설치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 1항)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식시간을 위한 그늘진 장소를 반드시 제공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 2항)
- 도급사는 수급사에게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수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이용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항 1호)

“기타 열거되지 않은 사업장은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육체적 피로 예방을 위해 가급적 설치합니다.”

다만,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으로서 휴식하는 동안 고객 응대나 전화 통화와 같은 업무로 방해 받지 않고 사무 공간 내에서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사무 공간을 휴게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요구되거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아래의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설치합니다.”

- 환경미화, 오물 수거·처리 업무, 폐기물·재활용품 선별·처리 업무, 미생물로 인한 신체 또는 피부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 관리대상/허가대상/금지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업무
- 근로자의 작업복이 심하게 젖게 되는 작업
- 방사성물질을 취급 업무
- 혈액 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
- 분진 작업
- 장시간 근로, 야간 작업을 포함한 교대 작업, 차량 운전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 고객·환자·승객·학생·민원인 등을 상대하는 감정 노동 업무
- 주로 서서 일하는 업무



핫디자인이 제공하는 기업형 휴게공간 컨설팅

구) 이트너스디자인

앞으로의 휴게공간은 단순히 “쉼”을 위한 공간이 아닌, 임직원들에게 애사심과 오너십을 심어주고, 외부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ESG 경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핫디자인은 고객의 사업 형태와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공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클라이언트 미팅



분석



디자인



조율



설계



시공



사후관리

CREATION

다양한 스타일의 일과 휴식이 가능한 풍부한 편의시설이 구비된 공간은 새로운 업무 스타일과 창의/혁신을 유도한다.

네이버에서 “핫디자인”을 검색해주세요! <http://hotdesign.co.kr>

홈페이지의 CONTACT 메뉴를 통하여 문의 바랍니다!

